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	정	2014.12.2	규정	제1120호
개	정	2015.6.8	규정	제1196호
개	정	2015.12.11	규정	제1272호
개	정	2017.4.21	규정	제1444호
개	정	2018.5.10	규정	제1555호
개	정	2019.5.31	규정	제1686호
개	정	2020.6.8	규정	제1833호
개	정	2020.12.11	규정	제1991호
개	정	2021.4.16	규정	제19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1, 2017.4.21, 2021.4.16>

1. “배출권”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이하 “할당배출권”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의2. “외부사업 감축량”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한다.

2. “매매거래”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 또는 경매를 위한 거래를 말한다.

3. “할당대상업체”란 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장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를 말한다.

3의2. “외부사업 사업자”란 주무관청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제2호의 외부사업 사업자를 말한다.

3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란 법 제22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종합정보센터”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와 상쇄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말한다.

5. “회원”이란 시장에서 배출권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삭제<2021.4.16>

나. 삭제<2021.4.16>

6. “호가”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6의2. “주문”이란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중개회원에게 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7. “시가”란 매매거래시간 개시 후 경쟁매매 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최초의 가격을 말한다.

8. “종가”란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경쟁매매 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최종 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기세”란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경쟁매매 방법에 따른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1항의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 매매거래가 중단되어 당일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세로 보지 아니한다.

10. “거래소시스템”이란 거래소가 호가의 접수, 매매거래의 체결 및 청산·결제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 “호가입력프로그램”이란 회원이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의 입력·정정·취소, 매매체결내역·결제내역·시세·통지사항의 확인 그 밖에 매매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거래소시스템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2. “자기매매”란 회원이 자기의 명의 및 계산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13. “위탁매매”란 회원이 해당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기타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제4조(매매거래 대상상품 및 종목) ①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대상이 되

는 상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12.11, 2019.5.31, 2020.6.8>

1. 할당배출권

2. 상쇄배출권

가. 국내 상쇄배출권

나. 국외 상쇄배출권

3. 외부사업 감축량

가. 국내 외부사업 감축량

나. 국외 외부사업 감축량

② 매매거래 대상상품의 종목은 배출권의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행연도(이하 “이행연도”라 한다)로 구분하고, 외부사업 감축량의 경우 법 제30조에 따라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인증을 받은 날이 포함된 연도(이하 “인증연도”라 한다)로 구분한다.<개정 2015.12.11, 2019.5.31, 2021.4.16>

제5조(종목별 매매거래기간) ① 배출권의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최초 매매거래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 30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회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까지로 연장한다.

② 외부사업 감축량의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은 인증연도에서 2년을 더한 해의 마지막 매매거래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4.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정부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매매거래시간) ①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유상할당 경매의 매매거래시간은 환경부의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입찰시간을 고려하여 경매일의 13시부터 14시까지로 한다.<개정 2019.5.31>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매거래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1. 거래소시스템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이하 “전산장애”라 한다) 발생으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휴장일)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휴장일로 하여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4.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한다)

5.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날에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임시로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을 재개한다.

제9조(매매거래의 중개) 회원 간의 매매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개업무는 거래소가 수행한다.<개정 2015.12.11>

제10조(거래소시스템에 의한 매매계약의 체결) 회원 간의 매매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은 거래소시스템으로 수행한다.<개정 2015.12.11>

제3장 회원

제1절 회원의 거래 및 자격

제11조(회원의 거래) ① 회원은 시장에서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의 회원이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정부의 계산으로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5.6.8, 2015.12.11, 2021.4.16>

② 회원은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거래소와 결제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매매거래의 결제대금은 해당 회원이 지정한 자의 명의로 거래소와 결제를 할 수 있다.<개정 2015.6.8, 2015.12.11>

제11조의2(회원의 종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자기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2.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 : 외부사업 감축량의 자기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3. 거래중개회원 : 배출권의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본조신설 2021.4.16]

제12조(회원의 자격) ①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5.12.11, 2021.4.16>

1. 할당대상업체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그 밖에 법 제22조의2에 의해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

②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법인인 외부사업사업자이어야 한다.<신설 2015.12.11>

③ 거래중개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어야 한다.<개정 2021.4.16>

제2절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13조(회원가입의 신청·심사 및 승인)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내용이 제14조의 회원 가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③ 거래소는 신청내용의 확인 및 신청인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회원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중개회원 가입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다.<개정 2021.4.16>

⑤ 회원가입의 신청, 심사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원가입요건)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거래중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1.4.16>

1.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영업건전성 및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사회적 신용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회원가입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4.16>

제15조(가입비의 납부) ① 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은 자(제12조제1항제2호의 회원을 제외한다)는 가입비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비는 거래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면제한다.<신설 2015.12.11>

1. 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첫 번째 이행연도 개시 전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2. 회원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가입비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가입일·가입승인의 취소 및 통지) ① 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5조에 따른 가입비의 납부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회원이 된다.

② 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가입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절차를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회원가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의 가입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해당 회원과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한다.

제17조(회원탈퇴 및 통지)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탈퇴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회원의 매매거래의 결제 그 밖의 모든 채무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탈퇴일을 정하여 해당회원에게 통지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5조에 따른 매매거래기간까지는 해당 이행연도의 종목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며,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외부사업 감축량의 경우 상쇄등록부에서 이를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회원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5.12.11, 2019.5.31, 2021.4.16>

1.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2. 해산 및 폐업

3. 제명

4. 거래중개회원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④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이 탈퇴한 때에는 이를 해당 회원과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이 탈퇴신청을 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회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해당 회원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제18조(회원지위의 승계) ① 합병 또는 영업을 양도한 회원의 지위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 아닌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회원이 행한 매매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행한 매매거래로 본다.<개정 2015.12.11>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지위의 승계를 승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회원과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11>

제3절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9조(채무변제순위) ① 거래소는 회원이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납부한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 및 대금에 관하여 회원인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2015.12.11>

② 거래소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완료 전에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 및 대금이 인도된 경우에 해당 회원이 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회원의 재산에 관하여 회원인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개정 2015.12.11>

제20조(수수료 등의 납부) ① 회원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수수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2018.5.10>

② 회원(제12조제1항제2호의 회원을 제외한다)은 거래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연회비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2021.4.16>

③ 제2항에 따른 연회비는 이행연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회원이 이행연도 중에 가입한 경우 연회비는 그 해 말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5.12.11>

④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연회비를 면제한다.<신설 2015.12.11>

1. 회원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법인이 회원지위를 승계한 경우
3. 그 밖에 연회비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거래소는 회원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탈퇴한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 중 그 해 말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제4항제1호에 따라 연회비가 면제된 경우 해당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원이 회원탈퇴한 경우에는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11>

제21조(법규의 준수) 회원은 법, 영 기타 관계법령, 이 규정 및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과 이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공정·신의의 원칙) 회원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공

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11>

제23조(회원가입요건의 유지) 회원은 제14조에 따른 회원가입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거래소에 대한 보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5.10, 2021.4.16>

1. 지급불능으로 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될 우려가 있는 때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3.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회생절차개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
4. 파산의 신청이 있을 때
5.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6. 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때
7. 상호를 변경한 때
8.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거나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9.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
10. 회원의 배출권 거래계정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일시사용중지, 정지 또는 폐쇄된 경우
11. 회원 및 그 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2.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당사자가 된 때
13. 재해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상

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때

14. 거래중개회원이 배출권중개회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15. 그 밖에 해당 회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4절 회원의 관리

제25조(배출권 거래계정의 정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거래소는 회원의 배출권 거래계정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일시사용중지, 정지 또는 폐쇄된 경우 해당 회원의 거래를 정지한다.<개정 2017.4.21>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때에는 거래소는 해당 회원의 미결제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다른 회원에게 인계시키거나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외부사업 감축량에 대한 상쇄등록부상 계정에 관하여 준용한다.<신설 2015.12.11>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1.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따른 조치 그 밖에 회원의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회원의 재무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요구) ① 거래소는 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이 거래소의 목적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조치사유) 거래소는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2021.4.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2. 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규정과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법령과 이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회원이 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금융위원회 또는 환경부의 조치 등에 따라 거래중개회원이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할 수 없게 되거나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9조(회원에 대한 조치) ① 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명
2. 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10억원 이하의 위약금의 부과

5. 경고

6. 주의

② 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직원의 징계를 그 회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

2. 직원의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의 징계의 요구는 거래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21.4.16>

1. 일반회원 및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2. 거래중개회원에 대한 제28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따른 징계 조치

3. 거래중개회원의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중 경고 또는 주의의 경우

④ 거래소는 제1항제4호의 위약금의 부과 조치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납된 위약금에 체납일수 및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위약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⑤ 거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제30조(회원조치 절차 등) ① 거래소는 제28조에 따른 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조치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 회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제4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⑥ 제4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조치의 통지) 거래소는 회원에 대하여 제명,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의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를 해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매매거래의 체결

제1절 매매거래단위 및 호가

제32조(매매거래단위) ① 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최소 단위가 되는 수량은 1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의 경우에는 1 감축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개정 2015.12.11>

② 제1항의 “1 배출권”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을 말한다.

제33조(호가수량단위) 호가수량의 단위는 1 배출권으로 한다.

제34조(가격의 표시 및 호가가격단위) 호가의 가격은 1 배출권당 원화로 표시하며,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한다)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지정가호가) 시장에서의 호가는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 거래를 하려는 호가로 한다.

제36조(호가접수시간) ① 호가는 호가접수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호가접수시간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 ① 회원이 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호가입력프로그램을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호가의 입력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호가의 효력) ① 호가는 접수된 때부터 당일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때까지(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성립되는 때까지로 한다) 효력을 지속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로서 제51조의 착오매매의 우려가 있는 때의 호가의 효력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할 수 있다.

③ 호가효력의 제한 그 밖에 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호가의 취소 및 정정) ① 회원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의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다른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에 한한다.

제40조(호가의 기록 및 통지) ① 거래소는 호가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즉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시스템에 기록한다.

② 거래소는 접수 또는 기록된 호가의 내용을 즉시 해당 호가를 제출한 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는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2절 호가의 관리

제41조(호가의 가격제한) ① 호가는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상한가(호가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높거나 하한가(호가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기준가격, 상한가 · 하한가, 가격제한폭 그 밖에 호가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2조(호가수량한도) 호가 당 지정할 수 있는 최대 호가수량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매도·매수의 제한) ① 회원은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매도가능수량 이내에서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을 매도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② 회원은 거래증거금계좌(매수대금의 사전 징수를 위하여 제57조제5항에 따른 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한 금액 및 당일 매도·매수대금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매수가능금액 이내에서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을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매매계약의 체결

제44조(경쟁매매의 원칙) ①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하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한다.

②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의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2. 같은 가격의 호가 간에는 호가가 접수된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제45조(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한다.

1. 매매거래시간 개시시의 가격
2.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3. 제49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4. 매매거래시간 종료시의 가격

② 제1항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한 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44조제2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치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 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와 합치가격을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전수량
2. 합치가격의 호가에 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수량
 - 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의 전수량
 - 나. 타방의 호가수량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단위 이상의 수량

④ 제3항에 따른 가격을 결정할 때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직전의 가격(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
2. 직전의 가격과 같은 가격이 없을 때에는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하는 가격이 두 개인 경우 같은 항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이 경우 가격의 결정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6조(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①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 외의 매매거래시간 중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 합치되는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44조제2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 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제47조(협의매매) ① 거래소는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원 또는 외부감축 감축량 전문회원은 종목, 가격,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매매거래(이하 “협의매매”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1.4.1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매매를 하기 위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③ 협의매매의 호가접수시간, 호가수량 그 밖에 협의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8조(경매 등) 법 제12조에 따른 유상할당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추가할당을 경매 또는 협의매매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협의매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5.10>

제49조(매매거래의 임의적 중단)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1. 거래소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제50조(매매거래내용의 통지 및 확인) ① 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의 통지는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하며, 회원이 이를 통지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착오매매의 정정) ① 거래소는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호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매매거래(이하 “착오매매”라 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1. 거래소시스템의 장애
2. 거래소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제1항의 착오매매의 정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시장조성자<개정 2019.5.31>

제52조(시장조성자) ① 환경부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시장조성자고시”라 한다)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매도 또는 매수의 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조성자가 되려는 자는 시장조성자고시 제3조에 따라 사전에 환경부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고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한 후 이를 환경부에 보고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종목 및 기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체결방법, 시장조성호가의 제출 시기·방법,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및 그 밖에 시장조성 및 시장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조성자고시와 환경부와 시장조성자 간에 체결된 시장조성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5.31]

제5장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제53조(매매거래의 확인) 거래소는 매매거래의 성립 후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

래를 확인한다.

제54조(면책적 채무인수) ① 거래소는 제53조에 따라 확인한 매매거래에 대하여 회원이 상대방인 회원에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채무를 이전한 회원은 이전하기 전에 상대방인 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한다.

제55조(차감 및 결제배출권·결제대금의 확정) ① 거래소는 제54조에 따른 채무인수를 한 후 거래소와 회원이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간에 차감한다.<개정 2015.12.11>

② 제1항에 따른 차감을 한 후에 남은 종목의 수량 및 대금의 금액을 거래소와 회원간에 수수하는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이하 “결제배출권”이라 한다) 및 대금(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한다.<개정 2015.12.11>

③ 채무의 차감, 결제배출권·결제대금의 확정 및 부가가치세액의 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6조(결제내역의 통지) ①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호가입력프로그램으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②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배출권의 내역을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종합정보센터 배출권등록부시스템·상쇄등록부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개정 2015.12.11>

③ 결제내역의 내용 및 통지시기, 회원별 통지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 ① 종합정보센터는 거래소로

부터 통지받은 결제배출권의 내역에 따라 결제시한까지 결제배출권을 납부하여야 할 회원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을 결제계좌(결제대금 수수를 위하여 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이 해당 결제와 관련하여 거래증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증거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제시한은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의 13시 30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5.31>

1.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상할당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2.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원이 결제배출권을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거나 결제대금을 거래소의 결제계좌로 납부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결제배출권·결제대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8조(결제지시) 거래소는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결제배출권 이전 및 결제대금 지급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1. 결제배출권의 경우 : 종합정보센터
2. 결제대금의 경우 : 결제은행

제59조(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의 이전·지급) ① 결제지시가 있는 경우 종합정보센터는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배출권을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결제배출권을 수령할 회원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 결제지시가 있는 경우 결제은행은 결제대금을 결제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수령할 회원의 결제계좌[회원이 결제대금 수령을 위하여 사전에 거래소로 통보한 자기명의로의 계좌 또는 회원이 지정한 자의 명의로의 계좌(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매거래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6.8>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결제배출권·결제대금의 이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0조(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① 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정보센터는 결제시한까지 결제배출권을 납부하여야 할 회원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거래소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내용 및 시기, 제3항의 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1조(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 결제의 특례) ① 거래소는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의 결제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② 제1항에 따른 결제의 조건, 현금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2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거래소는 회원이 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인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1.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해당 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의 전부 또는 일부나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4.16>

1. 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3.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행하는 국내지점인 경우 국외의 본점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원이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현금(제4항에 따른 매도대금을 포함한다) 및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제4항에 따라 매수한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을 포함한다)으로 채권회수에 충당하거나 해당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11>

④ 거래소는 지급정지한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을 매도하거나 지급 정지한 현금으로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을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⑤ 거래소는 회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해당 회원에 파견하여 원활한 결제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결제불이행에 따른 조치의 해지) ① 거래소가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원의 거래를 정지한 경우 해당 회원은 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거래소에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조치의 해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의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제6장 시장의 관리

제64조(시세 등의 공표)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공표한다.

1. 현재가·시가·최고가·최저가 및 종가
2. 거래량 및 거래대금
3.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또는 기준가격
4. 매도·매수별 최우선히가의 가격 등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세 등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5조(시장정보의 관리) 거래소는 시장에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생

성되거나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시장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설비 등을 통하여 회원 그 밖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정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한다.

제65조의2(보유한도 제한) ① 거래소는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로 보유하게 되는 수량이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하 “보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호가 중 보유한도를 초과시키는 호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보유한도는 회원이 거래가능한 모든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합한 수량으로 산정한다.

③ 거래소는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하여 보유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이 보유수량을 사전에 원활히 조정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사전예고기간”이라 한다)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유한도 변경으로 회원의 보유수량이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거래소는 회원의 보유한도를 증가시키는 호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6]

제66조(회원에 대한 통보사항) 거래소가 시장관리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는 사항 그 밖에 회원에 대한 통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7조(회원의 보고 및 자료제출)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매매거래 및 결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시장상황 등의 상시과약) 거래소는 이 규정에 따른 시장조치의 적시성·적정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시장의 상황 등을 과

악한다.

제69조(전산장애시의 조치) 거래소는 호가폭주 등의 사유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전산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의 정지 또는 매매거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0조(결제조건 등의 변경)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사유로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71조(일반상품시장위원회<개정 2020.12.11>) ① 거래소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시장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상품시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1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12.11>

제7장 보칙

제72조(매매관련자료의 보존기간) 거래소는 매매거래내용 등 매매관련 자료를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한다.

1. 제37조에 따른 호가의 입력내용 : 10년
2. 제50조에 따른 매매거래내용 : 10년
3. 제51조에 따른 착오매매와 관련된 자료 : 10년

제7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20호, 2014.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목별 매매거래기간에 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당배출권의 경우 1차 계획기간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매매 거래를 시작하며, 상쇄배출권의 경우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매매거래를 시작한다.

부칙 <제1196호, 2015.6.8>

이 규정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2호, 2015.12.11>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7조제3항, 제19조, 제25조제3항, 제28조,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외부사업 감축량 관련 부분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호, 2017.4.21>

이 규정은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호, 2018.5.10>

이 규정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6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거래 대상상품 및 종목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 제4조에 따라 거래되고 있는 상쇄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은 각각 국내 상쇄배출권 및 국내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본다.

제3조(종목별 매매거래기간에 대한 특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상쇄배출권 및 해외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기간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작한다.

부칙 <제1833호,2020.6.8>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호,2020.12.11>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호,2021.4.16>

이 규정은 거래소시스템 및 종합정보센터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